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5. .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재공급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건설자재·부재에 관한 품질검사 대장 등 증빙자료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기한을 현행대로 7일로 하며, CSI에 입력하는 대상의 위임규정을 명시함.

또한,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성적서 발급 7일 이내에 CSI에 입력하도록 하고, 영업정지 대상에 CSI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를 추가하며, CSI 미입력 사항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수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자재공급원에 관한 사항은 수요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7조제1항).

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부재의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하도록 제55조제3항을 신

설하고, 입력기한을 현행대로 7일로 하며, CSI에 입력하는 대상의 위임규정을 명시함(제55조제3항 신설, 제55조제5항).

다. 품질검사 대행 시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현행대로 7일 이내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를 영업정지 대상에 추가하고, 미입력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함(안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제89조제5호의2 삭제 및 제91조제3항제12호의2 신설).

마. 품질시험 및 검사 위반의 영업정지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함(안 부칙 제2조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중 “아니한 경우”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로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으로 한다.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안 제57조제1항 중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을 “공급(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발주자

2.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안 제60조제3항 중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를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89조제5호의2를 삭제한다.

안 제91조제3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7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 ----- ----- ----- -----.	②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1. ~ 6. (개정안과 같음)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 ----- ----- ----- -----	7. ----- ----- ----- ----- -----
가. ~ 마. (생략)	가. ~ 마.(현행과 같음)	가. ~ 마.(개정안과 같음)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	바. ----- ----- -----	바. ----- ----- -----

<u>질검사 내용을 제 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u>	<u>-----제 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u>	<u>-----제 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u>
사. (생략)	사. (현행과 같음)	사. (개정안과 같음)
③ ~ ⑤(생략)	③ ~ ⑤(현행과 같음)	③ ~ ⑤(개정안과 같음)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② (생략)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

-----.

⑤ -----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공급(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u>는 자의 승인, 승인 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u> -----. <u>1. 발주자</u> <u>2.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u> <u>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u> <u>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u> ②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는 자의 승인, 승인 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u> -----. <u>1. 발주자</u> <u>2.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u> <u>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u> <u>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u> ②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② (생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대장을 포함한 제2호에 적합하</u>	<u>는 자의 승인, 승인 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u> -----. <u>1. 발주자</u> <u>2.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u> <u>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u> <u>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u> ②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u>다는 증빙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u>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 ----- ----- ----- ----- ----- ----- ----- ----- -----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개정안과 같음)
<후단 신설>	<u>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u>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u>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u>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u> ④ (생 략)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u>지원 통합정보 체계 입력방법</u>,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품질검사</u> <u>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u>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u>,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 ----- ----- ----- -----<u>품질검사</u> <u>를 하는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u> ④ (개정안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	--	--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 ----- ----- ----- -----.	제89조(벌칙)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u>5의2. 제57조제3항에 따른 증빙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u>	<u><삭제></u>
<u>5의2.</u> (생략)	<u>5의3.</u>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u>5의2.</u> (현행과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6. (개정안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9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③ ----- -----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략)
<신설>

13. ~ 16. (생략)
④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제55조제3항
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
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을 건설공사 안전
관리 종합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
지 아니하거나 거
짓으로 입력한 자

13. ~ 16.(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처분
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 제7호

		<u>바목의 개정규정은</u> <u>이 법 시행 이후</u> <u>실시하는 품질시험</u> <u>및 검사부터 적용</u> <u>한다.</u>
--	--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85
----------	-------

발의연월일 : 2021. 8. 3.

발 의 자 : 홍기원 · 강선우 · 기동민
김교홍 · 김승원 · 박상혁
안민석 · 정일영 · 정정순
최인호 · 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품질검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이 현장에 반입된 건설자재를 품질검사하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자재 등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범위에 자재 공급원 승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현장시험을 통해 품질을 확인한 경우에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주요 이해관계자의 품질관리정보 접근이 어렵고,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해 결과가 공개되는 외부의뢰 시험도 시험기관의 지연 입력, 입력 누락과 거짓성적서 발급 등의 문제가 지속하여 적발되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건설자재·부재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재공급원 승인, 승인 취소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시험을 실시한 건설자재·부재에 대해서도 입력·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며, 품질검사 입력시스템도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CALS)를 통한 사후입력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전 과정입력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자재공급원에 대한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 나.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빙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함(제57조제3항 신설).
- 다.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 라. 품질검사 대행을 의뢰받은 자가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하고,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3항 및 제89조제6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7호바목 중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 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로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으로 한다.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7조제1항 중 “공급 및”을 “공급(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등을 포함한다)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주자

2.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제6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를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방법”을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으로 한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91조제3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제7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략)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마. (생략) 바.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u>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u> 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사. (생략) ③ ~ ⑤ (생략)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제62조에 따른 <u>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u> 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u>거짓으로 입력한 경우</u> 사.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u>

③ (생 략)

④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제 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 3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제4항-----.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① -----공급(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승인, 승인거부 및 취소, 점검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략)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
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
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
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생략)

등을 포함한다) 및-----
-----.

1. 발주자

2.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제4
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4.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

----- .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방법,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생략)

<신설>

③ -----

-----품질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
-----.

제91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제60조제3항에

13. ~ 16. (생략) ④ (생략)	<u>따른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u> 13. ~ 1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